

# 알기 쉬운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 (1)

이병주 /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 과장

## 서론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함)」은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법 제1조).

하도급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함)」 제23조 제1항 제4호(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중 하도급거래에 관련된 사항을 규제하기 위한 보완 입법의 성격을 갖고 있어 하도급법의 적용을 받는 사항은 공정거래법의 동 규정을 적용받지 않게 된다.

민법이나 상법과 같이 개인간의 의무나 권리에 대하여 규정한 법률은 거래 주체간의 지위가 대등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자유롭게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반면에 하도급법은 하도급거래 속성상 원사업자의 지위가 수급사업자보다 경제적으로 우월하다는 것을 전제로 상대적으로 강한 사업자가 약한 사업자에 대하여 행할 수 있는 우월적지위 남용 행위 등을 규제함으로써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질서를 유지한다는 것을 근본원리로 하고 있다. 또한 하도급법은 복잡 다기하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경제사정에 따라 탄력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법해석상 광범위한 재량을 부여할 수 있도록 일반사항을 규정하는 조항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으며, 법운용도 합의제 행정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에 담당토록 하여 전문성과 객관성

을 확보하고 있다.

하도급법은 1984년 12월 31일 제정되어 3회에 걸쳐 개정(1차 개정 90년 1월 13일, 2차 개정 92년 12월 8일, 3차 개정 95년 1월 5일)된 바 있으며, 3차 개정시에는 수급사업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법적용 대상 사업자를 대폭 확대되고 절차상의 미비점을 보완한 바 있다.

하도급법의 올바른 이해를 위해 먼저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대상 사업자와 적용대상이 되는 거래내용을 살펴보고,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지켜야 할 일반적 의무사항과 원사업자가 하여서는 아니되는 금지행위의 내용을 알아본 후 하도급사건의 처리내용과 절차를 3회 정도로 나누어 설명하고자 한다.

## 하도급법 적용 범위

### 1. 법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자

하도급법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하도급거래”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나 수리, 건설을 위탁하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서 위탁받은 내용대로 제조나 수리 또는 시공을 하여 원사업자에게 납품·인도하고 대가인 하도급 대금을 받는 행위로 하도급거래는 크게 제조, 수리 및 건설 하도급(이하 “제조·수리·건설위탁”이라 함)으로 구분된다.

제조·수리업종인 경우 법적용 대상 사업자는 「중소기업기본법」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에게 동행위를 위탁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라 하더라도

수급사업자에 비해 연간 매출액 또는 상시고용 종업원수가 2배 이상인 경우이다.

그러나 중소기업자중 연간 매출액이 20억원 미만이거나 상시고용 종업원 수가 20인 미만인 제조업자와 도소매업자는 원사업자가 될 수 없으며, 제조업중 소프트웨어 개발촉진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의 개발,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 및 건축사법에 의한 설계 위탁의 경우 연간매출액이 30억원 미만이거나 상시고용 종업원수가 30인 미만일 때는 원사업자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간 매출액이라 함은 사업자의 하도급계약 시점의 직전 사업 연도의 매출총액을 말하는 것으로 관할세무서장이 확인·발급하는 재무제표 증명원의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이 기준이 된다. 상시고용 종업원수란 사업자가 상시고용하고 있는 하도급계약시점의 직전사업년도말의 종업원수를 말하며, 사업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소득세징수액집계표상의 월급여 간이세율(AO2)의 총인원을 기준으로 한다.

신규사업자로서 하도급계약시점의 직전 연도의 상시고용 종업원수, 매출액 등에 대한 실적이 없어 이를 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하도급계약 시점의 상시고용 종업원수를 적용하고, 연간 매출액은 확인이 가능한 기간 동안의 금액을 기초로 추계하여 적용한다.

건설위탁의 경우, 중소건설업자에게 위탁하는 대기업에 해당되는 건설업자와 중소건설업자라 하더라도 건설위탁을 받은 자의 연간 도급한도액 또는 상시고용종업원수의 2배 이상인 경우에는 법 적용대상 사업자가 된다. 이 경우에도 연간 도급한도액이 30억원 미만이거나 상시고용종업원수가 30인 미만인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될 수 없다.

이 경우 도급한도액이라 함은 사업자의 하도급 계약시점에 적용되는 도급한도액을 말하며 수개공종의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면허별 도급

한도액을 합산한 액을 기준으로 한다.

법적용 사업자와 관련하여 하도급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합병이나 영업 양수 또는 상속 등을 통하여 전사업자의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 하도급거래에 따른 제반 권리 의무도 승계된 것으로 보며, 권리 의무를 승계한 사업자가 승계 시점에서 법적용 사업자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하도급거래에 있어서는 법적용대상 사업자로 간주된다.

특히 건설업의 경우 건설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정지, 면허나 등록의 취소, 지정의 해지 및 기타의 사유로 자격을 상실한 사업자 또는 그 사업자의 포괄승계인이 공사를 계속 시공할 경우에는 동 처분 이전의 공사 부분뿐 아니라 처분 이후의 공사 부분에 대해서도 하도급거래 당사자로 보게 된다.

한편, 공정거래법 규정에 의해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는 중소기업법상 대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더라도 원사업자로 간주되어 법적용대상 사업자가 된다.

## 2. 법적용 대상이 되는 위탁의 범위

하도급법 적용 대상이 되는 하도급거래는 앞에서 설명한 법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수리·건설위탁 등을 하고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이라 함)을 제조·수리 또는 시공하여 원사업자에게 납품 또는 인도하고 그 대가를 수령하는 행위로서 위탁 행위별로 다음의 위탁 행위가 이에 해당된다.

### 가. 제조 위탁의 범위

하도급법의 적용을 받는 제조 위탁은 물품의 제조·판매·수리 또는 건설 행위를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그 업에 따른 물품의 제조를 위탁하는 것으

로 그 업에 따른 물품의 범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시('95. 4.)로 정해져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물품을 제조·판매·수리를 업으로 하는 사업자의 경우 ① 제조·수리·판매의 대상이 있는 완제품이나 ② 물품의 제조·수리 과정에 투입되는 중간재로서 규격 또는 품질 등을 지정하여 주문한 원자재, 부품, 반제품 ③ 물품의 구성에 부수되는 포장용기나 사용법을 알려주는 사용 안내서 등의 제조 ④ 임가공을 위탁하거나 ⑤ 물품의 제조에 필요한 금형, 사형, 목형 등의 제조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할 때 법적용대상 거래가 된다.

예를 들어 판매를 업으로 하고 있는 백화점사업자가 판매하고자 하는 와이셔츠를 다른 제조업자에게 위탁하거나, TV 제조를 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자가 브라운관 및 포장용 박스 등을 제조 위탁하는 경우 또는 의류 판매업자가 원단을 제조 위탁하거나 염색을 의뢰하거나 임가공하는 경우 등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사업자가 소프트웨어 개발을 업으로 하는 경우 소프트웨어 개발·생산, 프로그래밍과 시스템 통합사업(SI) 및 자료 처리나 데이터베이스 개발 등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할 때, 사업자가 엔지니어링 활동을 업으로 하는 경우 사업 및 시설물에 대한 타당성 조사, 감리 및 유지관리 등을 타사업자에게 위탁하거나, 사업자가 건축 설계를 업으로 하는 경우 건축물의 대수선을 위한 구조계산, 건축설비나 공작을 설치 공사에 필요한 도면이나 시방서 등의 제조를 위탁하는 경우가 법적용 대상이 된다.

셋째, 사업자가 건설을 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① 제조 위탁으로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부품 또는 엘리베이터 등과 같은 시설물을 규격 또는 성능 등을 지정한 도면이나 설계도, 시방서 등에 따라 주문제작하거나 ② 레미콘, 아스콘 등 건설공사에 투입되는 자재를 거래 관행상 별도의 시방

서 등의 첨부 없이 규격 또는 품질 등을 지정하여 주문하거나 ③ 신발장이나 거실장, 창틀등 건축공사에 설치되는 부속시설물의 규격 등을 지정한 도면이나 시방서 및 사양서 등에 의하여 제조를 위탁하는 행위가 모두 법적용대상이 된다.

그러나, 자기 소비용의 단순한 일반 사무용품을 구매하거나 물품의 제조를 위한 공장설비 기계 등을 단순히 제조 위탁하는 경우 위탁사업자의 업이 그 설비기계의 생산 또는 판매업이 아니라면 하도급법상의 거래라 볼 수 없으며, 무역업자가 판매, 제조업자의 요청에 따라 단순히 수출입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법상의 제조위탁이 되지 않는다.

#### 나. 건설 위탁의 범위

하도급법상의 건설하도급거래는 건설관계법령(건설업법, 전기공사법, 전기통신공사법, 소방법, 주택건설촉진법), 환경관련법령(수질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관리법,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및 에너지관련법령(에너지이용합리화법, 도시가스사업법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및 사업관리법)에 의해 면허를 취득하거나, 등록하거나, 지정받은 사업자가 관련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시공하도록 위탁한 경우가 해당된다.

예를 들어 건축 신축 공사를 수주한 원사업자인 종합건설업자가 토공사 부분을 토공전문 건설업자에게 시공토록 위탁하거나 또는 설비공사 부분을 설비전문 건설업자에게 시공토록 위탁한 경우를 말한다. 또한 전기공사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한 일반건설업자가 전기공사면허를 소지한 사업자에게 전기공사가 부대적인 공사를 위탁한 경우도 건설위탁에 해당되며, 환경 관련 또는 에너지 관련 공사의 사업자가 건설관계법령 등에 의한 면허자

에게 시공을 위탁하는 경우에도 법적용 대상이 된다.

아울러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령에 의해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시공위탁한 경우에도 그 건설공사가 건설업법시행령 제4조의 일반 및 특수 공사에 해당되는 경우 1건공사의 공사 금액이 3천만원에 미달되거나 전문 공사의 경우 700만원에 미달되는 경우, 전기공사업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꽃입 접속기의 보수·교환 또는 소형변압기 설치 공사 등 경미한 공사인 경우에는 하도급법 적용대상이 된다.

한편,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형식상으로는 하도급계약을 맺었으나 실제공사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면허를 대여받은 건설업자가 시공했을 경우 면허를 대여받아 시공한 사업자는 하도급법 적용 대상사업자가 아니나, 원사업자가 직영하는 것처럼 형식상 되어 있으나 수급사업자가 당해 공사를 사실상 시공하는 경우에는 하도급거래가 있는 것으로 보게 된다.

## 거래 당사자의 일반적 의무사항

하도급법은 하도급법에 적용되는 거래를 함에 있어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지켜야 할 일반적 의무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민법은 제 664조부터 674조까지 도급과 관련하여 도급인과 수급인의 제반부터 647조의 권리·의무사항에 대해 상세히 규정하고 있고, 상법도 제46조에 '작업 또는 노무의 도급의 인수'를 기본적인 상행위로 규정하고 있어 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시 민사법에 의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민·상법상의 규정들은 도급계약이 기본적으로 당사자간에 대등하고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체결됨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업계의 현실은 위탁하는 자가 경제적으로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할 여지가 크고 위탁받은 자가 일방적으로 당하는 경우도 많

아 계약자체가 대등한 상태에서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계약 이행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소송을 통해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막대한 소송비용이 소요되고, 소송기간도 길고 복잡하며, 소송 과정이 변론주의에 입각하고 있어 수급사업자가 주장하지 않거나 입증하지 못한 부분은 구제받을 수가 없어 구제 내용이 불충분한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하도급법에서 하도급거래의 당사자들이 지켜야 할 일반적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정부가 범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범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 조치를 취함으로써 하도급거래의 공정화를 도모하고 분쟁 발생을 사전적으로 예방하여 수급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소송 등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하도급거래에 있어 원사업자가 지켜야 할 7가지의 일반적 의무사항에 대해 설명하기로 한다.

## 1. 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①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의 내용 ② 목적물을 원사업자에게 납품 또는 인도하는 시기 및 장소 ③ 목적물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④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 방법 및 지급 기일 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의 제조·수리 또는 시공에 소요되는 원재료 등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원자재 등의 품명·수량·제공일·대가 및 대가의 지급 방법과 지급 기일 등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법 제3조 제1항, 영2조).

이 서면에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하며, 원사업자나 수급사업자는 위에 제시된 5가지에 관한 서면 외에 ① 목적물의 수령증명서 ② 목적물의 검사 결과와 검사종료일 ③ 하도급대금의 지급일·지급 금액 및 지급 수단 ④

선급금 및 지연이자, 어음할인료, 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일과 지급 금액 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원재료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한 경우에는 원재료의 내용과 공제일, 공제금액 및 공제사유 ⑥ 설계 변경 등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 금액 및 조정 사유 등에 관한 서류를 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법 제3조 제2항, 영3조).

서면 교부 시점에 관해 하도급법에서는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어 제조등의 위탁을 하기 이전에 합의 원칙이나, 늦어도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시점에는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며, 제조등의 위탁을 한 후에 서면을 교부하면 서면의 지연 교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제조하도급거래등이 계속적 거래로 이루어질 경우 법정 기재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고 이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제조 위탁등을 주문서, 발주서로 의뢰할 경우 반드시 매 발주시마다 서면을 작성·교부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다만 당초 계약된 내용이 설계 변경, 추가 공사의 위탁 등으로 계약 내용이나 금액이 변경되는 것과 같이 계약의 중요 부분이 변경될 경우에는 반드시 추가(변경)서면을 작성·교부하여야 한다.

서면 교부는 반드시 특정 양식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특별히 형식에 구애받을 필요는 없으나 상기 법정 기재사항은 반드시 서면으로 기재되어야 한다. 현재 건설, 전자, 자동차, 조선, 섬유, 전기, 기계 업종에서는 표준 하도급계약서가 마련되어 사용되고 있다.

추가로 건설자재, 소프트웨어업, 엔지니어링 활동업 및 건축설계업에 관한 표준하도급 계약서도 마련중에 있으며, 11월부터는 관련협회 등을 통해 보급할 예정이다. 표준하도급계약서는 하도급법과 시행령 제정의 추지에 따라 공정한 하도급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하도급거래에 관

련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표준계약서를 이용하면 양자간의 권리·의무 관계가 명백하게 된다. 또한 분쟁 발생시 사실 확인 및 책임 소재를 수월하게 규명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신속하고 충실하게 피해를 구제 받을 수 있다는 잇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향후 하도급거래의 분쟁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하도급법이나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부분의 해석 등에 표준하도급계약서의 계약 조건을 우선적으로 참작토록 할 계획으로 가급적이면 이를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싶다.

## 2. 선급금의 지급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 또는 시공에 착수할 수 있도록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법 제6조 제1항).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공사비의 일정률(총액비율)로 지급받았을 경우 수급사업자에게도 같은 비율로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선급금의 사용 용도, 지급대상별 공종 등 선급금의 사용 내역을 지정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정 내역별로 비율을 계산하여 산정한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기 이전에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았을 경우에는 건설 위탁일을 기준으로 15일 이내에 지급하면 된다. 원사업자가 선급금 지급에 대한 선급금 지급보증서 등 담보를 요구하였음에도 수급사업자가 동 담보를 15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동 선급금을 15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적법하다고 보나, 담보 등이 지연 제공된 경우 선급금

지급기일이 담보 제공일로부터 자동적으로 15일이 연장되는 것이 아니며, 2~3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간내에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법의 취지라 볼 수 있다.

선급금을 지급한 후 기성 대금에서 공제하여 정산하는 경우 매회 납품이나 기성이 발생되면 동 금액에다 당초에 적용된 선급금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매회 일률적으로 정산하여 공제하여야 하며 일괄 공제하는 것은 위법 행위에 해당된다.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15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25%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며, 선급금을 발주자로부터 현금으로 수령한 경우 수급사업자에게도 원칙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나 어음 등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정지급기일 15일 초과한 날부터 어음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12.5%에 해당하는 어음할인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어음으로 수령한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동일 결제 조건의 어음으로 지급하는 것은 허용되나, 어음의 결제기간이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어음의 조건보다 불리한 경우 불리한 기간부분에 대해서는 할인료를 부담해야 한다.

한편,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어음 등으로 지급하고 기성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하는 경우 매회 기성금에서 공제되는 선급금의 만기일이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법정 지급기일인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부분에 대해 어음할인료를 별도로 부담하여야 한다.

### 3. 내국신용장의 개설

원사업자는 수출할 물품을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위탁할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위탁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을 수급사업자에

게 개설해 주어야 하며, 신용장에 의한 수출에 있어 원사업자가 원신용장을 받기 전에 제조 위탁하는 경우에는 원신용장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을 개설해 주어야 한다(법 제7조).

수출용 물품의 무역거래에 있어 외국사업자(Buyer)와 국내 수출자간에 물품 공급에 관한 계약이 이루어지면 동무역거래의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에 해당하는 신용장(Letter of Credit : L/C)이 개설되고, 수출사업자는 동 신용장(통상 Master L/C라고 함)을 근거로 수출 이행에 소요되는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국내생산업자(수급사업자)를 수혜자로 하는 내국신용장(Local L/C)을 개설해 주어야 한다.

이 경우 내국신용장은 제조 위탁 후 수급사업자로부터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를 수취한 후 15일 이내에 개설해 주어야 한다. 다만 수급사업자가 내국 신용장에 의한 거래를 원하지 아니하거나 원사업자가 내국신용장 개설은행에 연체 및 대지급당한 상태에 있거나 개설 한도 부족 등으로 인하여 신용장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내국신용장 미개설 행위로 보지 않는다.

### 4. 관세 등 환급금의 지급

원사업자가 수출할 물품을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한 경우에 「수출용 원자재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관세 등을 환급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받은 내용에 따라 이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법 제15조 제1항). 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은 수급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한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연 25%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수출용 물품의 제조에 소요되는 자재를 외국에서 수입한 경우 관세를 부담하나, 이를 완제품으로

제조하여 선적(수출)한 경우에는 이미 부담하였던 관세를 환급받게 되는데, 하도급거래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물품을 제조 납품(내국신용장을 개설한 경우에는 검사완료 즉시)하고 인수증을 수령한 후 관세액 산출의 근거가 되는 기초 원자재 납세 증명원(일명 기납증이라 함)을 관할세관에서 발급받아 수출업체에게 제출하여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하도급계약시 이미 관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단가를 결정한 것이 명백히 입증될 경우 관세 환급 문제는 발생치 않는다.

## 5. 검사 기준·방법 및 시기의 결정

수급사업자가 납품 또는 인도할 목적물에 대한 검사의 기준과 방법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하되 객관적이고 공정타당하여야 한다(법 제9조 제1항). 검사 기준을 당사자간에 합의하여 정하지 않고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기준으로 불합격처리한다든가 또는 통상 적용되는 검사기준보다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불합격처리하는 경우 범위반이 된다. 검사 방법에 있어서도 납품 수량이 많아 전수 검사가 사실상 불가하여 표본 검사를 하게 되는 경우 계약시 이러한 검사 방법이나 결과처리 방식을 구체적으로 합의하지 아니하고서 원사업자가 임의로 표본 검사를 실시하고 불량률을 임의로 결정하여 전 품목에 대해 일방적인 판정을 하는 것은 금지된다.

한편, 검사 시기와 관련하여서는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목적물을 수령한 날(건설 위탁의 경우에는 시공완료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 통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법 제9조 제2항). 검사 시기를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원사업자로 하여금 단기간 내에 검사를 실시케하여 당사자간의 채권·채무를

조속히 확정하여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검사 기한이 너무 짧다거나, 불량 여부가 목적물이 생산공정에 투입한 후나 소비자가 사용한 뒤에야 판별된다는 이유로 대금 지급을 유보하는 것은 위법 행위가 된다.

수출업자가 납품받은 목적물을 수출한 후 외국 바이어로부터 품질 불량을 이유로 클레임이 제기된 경우 동 부문에 대한 책임문제는 원칙적으로 당사자간의 계약 내용에 따라야 한다. 설사 클레임의 내용이 정당하고 그 책임이 수급사업자에게 있음이 명확하다고 하더라도 원사업자도 검사를 게을리한 책임이 있으므로 모든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해서는 아니된다.

목적물을 수령하고 차후 제조 공정에서 불량 발생되면 정해진 비율대로 대금을 공제할 수 있도록 양당사자가 합의한 경우 제조 공정에서 나타난 불량을 수급사업자가 인정하여 적법하게 대금을 공제키로 서면 합의하였다면 위법으로 볼 수 없다.

한편, 목적물의 작동 상태 등을 확인하는 데 상당기간이 소요되어 목적물의 납품일을 시운전 등의 완료일로 정한 경우 상관행 등에 비추어 동기간이 부당하게 장기인 경우 위법으로 볼 수 있으며, 아울러 당사자간 합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에 장기기간이 소요됨을 이유로 수령을 지체하는 것은 위법 행위에 해당된다.

계속적으로 빈번하게 납품이 이루어지는 경우 월 1회 마감하여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허용되나, 물품의 검사 결과를 월 1회로 정한 마감일을 목적물 수령일로 보고 그 날로부터 10일 이내 통보하는 것은 법 위반이 된다.

그 이유는 하도급대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일정 기간 납품한 물량을 묶어 최종 마감한 날이 목적물 수령일이 되나, 검사는 마감제도 문제와는 관계없이 각각의 물품 납품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실시해야 하기 때문에 마감제 등을 이유로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되기 때문이다. ■